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서일준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3506

발의연월일: 2024. 9. 2.

발 의 자:서일준·고동진·권영세

이헌승 • 이상휘 • 박성민

백종헌 • 윤상현 • 조승환

정점식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을 보호·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에 대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·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음.

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참여권을 제도화하며,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를 촉진하기 위해 중앙행정권한을 조속히 지방으로 이양할 필요성이 있음.

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위기를 스스로 극복하고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중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·군관리계획 결정 권한의 일부를 시·도지사에게이양하고자 함(안 제29조 및 제40조).

법률 제 호
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9조제2항제4호 중 "수산자원보호구역"을 "수산자원보호구역(전체구역 면적 중 1제곱킬로미터 이상의 공유수면에 한정한다)"으로 한다. 제40조 중 "해양수산부장관은"을 "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"으로, "있다"를 "있다(시·도지사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 관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)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9조(도시・군관리계획의 결정	제29조(도시·군관리계획의 결정
권자) ① (생 략)	권자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	2
호의 도시 · 군관리계획은 국토	
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. 다만,	
제4호의 도시・군관리계획은	
해양수산부장관이 결정한다.	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제40조에 따른 <u>수산자원보호</u>	4 <u>수산자원보호</u>
<u>구역</u> 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	구역(전체 구역 면적 중 1제곱
도시 • 군관리계획	킬로미터 이상의 공유수면에
	<u>한정한다)</u>
제40조(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)	제40조(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)
해양수산부장관은 직접 또는 관	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・도지
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	<u>사는</u>
아 수산자원을 보호 육성하기	
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	
에 인접한 토지에 대한 수산자	
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	
도시 ·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	
수 <u>있다</u> .	<u>있다(시·도지사가 결정하</u>
	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
	게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)